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80 발의연월일: 2022. 10. 21.

발 의 자:윤한홍ㆍ권성동ㆍ박성중

서범수 · 서일준 · 엄태영

윤주경 • 윤창현 • 이달곤

이채익 · 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8년말 1.1조원에서 2021년말 3.0조원으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며,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나타났었던 선불전자금융 업자의 과도한 할인발행이나 미흡한 가맹점 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행위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등록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 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네이버파이낸셜의 국내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카카오페이, 토스 등 총 3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음. 현재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하며, 향후 온라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한 후불결제 수단이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들에 대한 규율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가.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 기준을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류식 선불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으로서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총발행잔액 기준 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안 제28조제3항제1호).
- 나.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안 제25조의2, 제43조제2항제5호 및 제51 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을 수탁 받은 금융회사는 이용자예탁금을 안전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2) 신탁한 이용자예탁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
-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마련
 -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맹점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그 사실을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제4호, 제36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5 신설).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51조제

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 라. 후불결제업무 도입(안 제35조의2, 제43조제2항제6호 및 제49조제5 항제6호의2·제9호의2 신설)
 - 1)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2)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 자를 금지함.
 - 3)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 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를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이용자에게 불리하 게 축소하는 경우(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이용자예탁금의 보호)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충전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예탁금을 수탁한 금융회사는 이용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③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예탁금을 신탁할 경우 그이용자예탁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탁한 이용자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 (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⑤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예탁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이용자예탁금의 정산방법, 신탁계약의 기준 및 방법, 운용현황 공시 등 그 밖에 이용자예탁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2개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 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 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 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
 - 1.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 2.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후불결제업무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신전 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3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 제 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10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 ④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결제한도액, 총제공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 하고 그 금액을 금융회사에 신탁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제1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통한 수익을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 3. 가맹점과 직접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제19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선불전자지 급수단 보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43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5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전액을 신탁하지 아니한 때
- 6. 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9조제5항에 제6의2 및 제9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불결제업 무를 한 자
 -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 게 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자. 다만,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 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후불결제업무로 구매 하도록 한 재화·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예탁금 전액을 신탁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 는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 2의3.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 2의4.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과 직접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2의5.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4호,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 14. -----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 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 <u>저</u>장(이하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충전"이라 한다)되어 발행된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 어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포 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 함한다) -----다.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통계법」 제22조제1항 것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상일 것 15. ~ 22. (생 략) 15. ~ 22. (현행과 같음)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생략)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① (연행과 살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 4.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수 있는 가맹점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이용자예탁금의 보호)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
자는 이용자예탁금(이용자로부
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전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전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예탁금 을 수탁한 금융회사는 이용자예 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 전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 다.
- ③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 라 이용자예탁금을 신탁할 경우 그 이용자예탁금이 이용자의 재 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탁 한 이용자예탁금을 상계(相計) ·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⑤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권 을 가지는 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예탁금으로 별도 관리하 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 한 금액을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이용자예탁금의 정산방법, 신탁계약의 기준 및 방법, 운용 현황 공시 등 그 밖에 이용자예 탁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

- 록) ①・② (생략)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
 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자
 -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만 사용되는 경우
 - <u>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u>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생 략)

2. (생략)

④·⑤ (생 략)

독) (1)·(2) (현행과 같음)
③
1

-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하는 자
-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2
 개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
 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다.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후불결제업무의 겸영)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

 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

 위
- 2.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이

 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후불결제업무에 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 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 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3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 의5,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 제47 조, 제49조 및 제50조의10은 그 리하지 아니한다.

④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결제한도액, 총제공한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 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 인발행 또는 적립금 등 경제 적 이익을 부여하고 그 금액을 금융회사에 신탁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저 ① (생 략)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 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 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2. 제1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발행 및 관리를 통한 수
익을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가맹점과 직접적으로 가맹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9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선
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
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세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2

- 17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제49조(벌칙)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각 호 외의 부분 현행과 같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
- 1. ~ 4. 삭 제
- 5. (생략)
-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 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 록을 한 자

<신 설>

- 7. ~ 8. (생략)
-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 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신 설>

- 5.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액을 신탁하지 아니한 때
- 6. 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제 35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 한 경우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49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 음)
 - 유)

5.	(현행과	간으)
U.	(27 % 47	モロノ

6.	 	 	 	 	 	 	
_	 	 	 	 	 _	 	
_	 	 	 	 	 _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불 결제업무를 한 자

7. ~ 8. (현행과 같음)

9.							 		
_							 		
- 9 <i>ي</i>	 2.	다-	음.	 각	목.	 의 (_	 하ㄴ	- }에

자에게 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용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자. 다만,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후불결제업
 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
 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10. (현행과 같음)

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 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

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 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제51조(과태료)	1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 4. (생략)

② ~ ④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이용자예탁금 전액을 신탁 하지 아니한 자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 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2의3.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 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2의4.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 여 가맹점과 직접적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